

별정직원 관리 시행세칙

제정 2009.10. 1 시행세칙 제10호
개정 2009.11. 5 시행세칙 제24호
개정 2011. 4.28 시행세칙 제53호
개정 2013. 1.24 시행세칙 제82호
개정 2015.11. 4 시행세칙 제12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직제규정」 제5조제4항 및 「인사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원의 임용, 복무, 퇴직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구분) 별정직원의 직무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별정직원 중 특정직 및 체육직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정관 또는 다른 사규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시행세칙에 정하는 내용을 따른다.

② 별정직원 중 연구직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연구원 관리 시행세칙」에 정하는 내용을 따른다.

제4조(직급체계 및 대우) 별정직원(특정직 및 체육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일반직원에 상당하는 직급을 부여하고, 그 해당 직급에 준하여 대우한다. 다만, 토지주택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을 특정직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에 상당하는 직급을 부여하고, 그에

준하여 대우한다.

제5조(정원 및 인력운영) ① 조직담당부서장은 별정직원에 대하여 소요인원과 예산을 고려하여 정원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인사담당부서장은 별정직원의 인력운영 상황, 부서 여건 등을 검토하여 직무 또는 인원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운영부서장(별정직원을 직접 사용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용된 별정직원의 해당 업무가 종료 또는 중지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인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운영부서장은 별정직원에 대하여 복무수칙, 작업요령, 안전 및 보안 등에 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그 근무상황을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제2장 채용

제6조(채용) ① 별정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운영부서장은 담당할 직무, 소요인원, 자격요건, 임용기간 및 대우 등을 명시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채용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일반직원으로 재직하는 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자는 별정직원으로 전환·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별정직원으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별정직원 전환신청서를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별정직원의 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용한다.

제7조(자격기준) ①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원 채용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제8조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고, 6급 상당 이하의 별정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다만, 연구원장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② 공사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일반직원이 제6조제2항에 따라 전환·임용되는 경우에는 상위직급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8조(채용방법) ① 특정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에 따라 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방식 또는 특별채용을 통해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5>

② 제1항의 채용에 관한 전형절차는 서류심사, 실무역량시험, 면접시험, 신체검사 등의 방법으로 단계별로 선택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하되, 그 밖에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체육직의 채용은 서류전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정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1.4.28>

1. 「인사규정」 제9조의 채용금지 대상인 자
2. 만 59세 이상인 자. 다만, 연구원장, 토지주택박물관장, 정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조직의 책임자(재무 및 감사분야에 한한다)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계약체결) 별정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담당직무, 임용기간 등을 명

시한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 16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임용기간) ① 별정직원의 최초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특정직 : 2년 이내

2. 체육직 : 1년 이내 (다만, 지도자의 경우에는 2년 이내)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수습기간) 별정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3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공사에서 퇴직한 일반직원 또는 일정한 경력을 인정하여 3급 상당 이상 별정직원으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두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재임용) ① 임용기간이 만료된 별정직원에 대하여는 업적, 능력, 태도,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② 운영부서장이 별정직원을 재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 45일전까지 운영실적, 운영계획 및 운영부서장 의견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별정직원 재임용 사유서를 첨부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용 대상자가 운영부서장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별정직원을 재임용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재임용 한다. 다만, 체육직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임용된 자의 재임용기간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으로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를」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의 임용기간으로 재임용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재임용에서 제외한다.

1.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종합근무평정에서 2회 연속 하위자에 해당하는 경우
2. 체육직(다만, 지도자는 제외한다)으로서 입사일로부터 매 5년마다 별표 4의 대회에서 3위 이내의 입상성적이 없는 경우

제3장 복무관리

제14조(신분보장) 별정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정년) ① 별정직원의 정년은 「인사규정」 제41조에 따른 일반직원의 정년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 대우 및 외부 공모절차에 따라 신규채용된 1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원은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퇴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한다.

1.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2. 제13조제3항의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재임용되지 않았을 때
3. 제13조제5항에 해당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2. 계약에 조건의 부관이 있을 경우 동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3.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았을 때
4.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되었을 때
6. 공사의 기구개편, 또는 일정한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가 그 과제를 완료하였을 때
7.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8. 「인사규정」 제38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보직을 받지 못하였을 때
9.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10. 채용 후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견되거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될 때
11. 제23조에 따른 종합근무평정에서 그 결과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3회 연속으로 불량하게 나타난 때

③ 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또는 제11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별정직원이 의원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직권면직의 예고) 별정직원을 직권으로 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직일 3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해고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직권면직 사유가 본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제18조(휴직) ① 별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2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3.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5.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6.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별정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고나 중병으로 간호가 필요할 때

②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 : 1년 이내

2.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경우 : 징집 · 소집기간 또는 해당 의무 수행 기간

3. 제1항제3호의 경우 : 2년 이내

4. 제1항제6호의 경우 : 1년 이내(다만, 여성은 3년 이내)

5. 제1항제7호의 경우 : 1년 이내(다만,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휴직기간 중에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

제19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되, 제18조제6호의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본 1년에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제20조(보직관리) 사장은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정직원을 전보 · 이동 · 파견 등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종합근무평정

제21조(근무성적평정) 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평정은 평정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1급 상당 이하 특정직을 대상으로 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로 실시하며, 일반직원과 연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임용 심사활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

④ 근무성적 평정자는 소속부서장과 소속팀장으로 한다. 다만, 피평정자 본인이 부서장 또는 팀장인 경우에는 평정자를 인사담당부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당해 평정기간 중 징계, 직위해제, 90일 이상 휴직(제1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총점 90점을 초과하여 평가할 수 없다.

⑥ 각 평정자의 평정 결과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피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의 점수로 한다.

⑦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2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평정기준일 현재 휴직·정직·직위해제·과건 등으로 근무일수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정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점수를 근무성적평정의 점수로 한다.

1. 휴직 또는 과건의 사유로 제외된 자 : 5급 상당 이상과 6급 상당 이

하로 구분하여 산출한 평균점수

2. 정직 또는 직위해제의 사유로 제외된 자 : 5급 상당 이상과 6급 상당 이하로 구분하여 산출한 하위 100분의 10의 평균점수

제23조(종합근무평정) ① 종합근무평정은 근무성적평정(70점), 다면평가평정(30점), 및 감점평정으로 구성한다.

② 다면평가평정은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③ 감점평정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4조(서열명부 작성) ① 특정직에 대하여 서열명부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열명부는 5급 상당 이상과 6급 상당 이하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5장 승진

제25조(승진원칙) ① 4급 상당까지의 승진은 상당 직급의 일반직원의 승진에 관한 「인사규정」 등을 준용하되, 3급 상당 이상으로의 승진은 업무성과, 능력 및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

1. 최근 1회의 근무성적평정점이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
2. 「인사규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3. 승진소요최저연수 미경과자

③ 승진심사는 「인사규정」에 따른 일반직원의 승진 심사와 연계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승진소요최저연수) 별정직원의 직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27조(특별승진 및 직무전환) ① 사장은 체육직이 국위선양과 공사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위직급으로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③ 사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육직(다만, 운동선수에 한한다)의 업무능력, 인력운영 상황, 해당 직급의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직으로 직무를 전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직무전환은 은퇴 이후로 하며, 특정직의 해당 직급 및 대우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28조(임용고시) ① 「인사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원 임용고시를 통과한 별정직원을 4급 이하 일반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별정직원에 한하여 일반직원 동일직급 기능직으로의 전환은 임용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임용에 관한 세부 자격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6장 임용 등 심의

제29조(임용 등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 87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2급 상당 이상 별정직원의 임용, 재임용, 직무전환 및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2. 3급 상당 이상 별정직원으로의 승진 및 특별승진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87조에 따라 설치된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3급 상당 이하 별정직원의 임용, 재임용, 직무전환 및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2. 제1항제2호 이외의 특별승진에 관한 사항

제7장 보칙

제30조(기타) 별정직원의 복무, 상벌 등 이 시행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 또는 그 밖에 사장이 따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부칙<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종전 한국토지공사의 「별정직원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원 및 대한주택공사의 「촉탁관리 준칙」에 따라 임용된 촉탁은 이 시행세칙에 따른 별정직원으로 본다.

제3조(재임용 제외 경과규정) 종전 한국토지공사의 체육특기자(양궁 선수에 한한다) 및 대한주택공사의 축탁(레슬링 및 근대오종 선수에 한한다)에 대하여 제13조제5항제2호의 “입사일로부터”는 “2009년 10월 1일로부터”로 한다.

제4조(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규정) 제26조에 따른 별정직원의 직급별 승진 소요최저연수는 별도의 지침 수립 전까지는 종전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해당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부칙<2009.11.5>

이 시행세칙은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28>

이 시행세칙은 201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24.>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3년 1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6급 별정직원의 일반직원으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이 시행세칙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6급 별정직원은 중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직원 6급 기능직으로 전환배치한다.

부 칙 <2015.11.4>

이 시행세칙은 2015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별정직원 직무구분 (제2조 관련)

구 분	직 무
연구직	공사업무와 유관한 전문연구 필요분야
특정직	비상계획,의무,국제금융,법률,세무,환경,교통,통계,전산,사서,비서,영상,방송,촬영,홍보,마케팅,영양·조리,보육,문화재 등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요하는 분야
체육직	전문적 체육지도자 또는 운동선수로서의 능력을 요하는 분야

[별표 2]

연구원장 채용자격기준 (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자 격 기 준
연구원장	1. 공무원 3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사 ¹⁾ 1급 상당 이상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3. 건설 분야 공공기관 ²⁾ 의 1급 이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4. 공공기관 중 연구관련 기관에서 원장 근무경력이 있는 자 5. 대학 정교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6. 이상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1) “공사”에는 종전의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를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구분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말한다.

[별표 3]

평정하위자 재임용 제외 및 직권면직 적용기준
(제13조제5항제1호, 제16조제2항제11호 관련)

구 분	종합근무평정			비 고
임용기간내	1차년도	70점미만	경고	
	2차년도	"	재임용 제외	연속
재직기간내 (임용기간 포함)	1차	70점미만	경고	
	2차	"	경고 + 이동	연속
	3차	"	직권면직	연속

[별표 4]

체육직 재임용 제외 기준 (제13조제5항제2호 관련)

구분	대 회 명	비 고
양궁	•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 • 국가대표 선발전, 대통령기, 전국체전	개인전에 한함
레슬링	•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 • 국가대표 선발전, 대통령배, 전국체전	
근대오종	•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 • 국가대표 선발전, 회장기, 전국체전	

[별표 5]

근무성적 평정표(제21조제3항 관련)

[별정직원 평가용]

평가항목		상세내용	평정척도
업무능력 [35] / [30]	기획력 및 창의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능력	10-8-6-4-2
	이해판단력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	10-8-6-4-2
	업무지식 및 발전가능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향후 발전가능성	15-12-9-6-3 (10-8-6-4-2)
업무 기여도 [45] / [30]	업무의 양	업무의 적극적 확보능력	10-8-6-4-2 (5-4-3-2-1)
	업무실적의 질	수행업무의 질적인 우위수준	10-8-6-4-2 (5-4-3-2-1)
	업무의 개선도	결과의 공사 업무개선에 대한 기여정도	10-8-6-4-2
	목표달성 실적	평정기간동안 업무완결 정도	15-12-9-6-3 (10-8-6-4-2)
업무자세 [20] / [40]	책임감	업무수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	10-8-6-4-2
	적극성	업무에 대한 열의와 추진력	5-4-3-2-1 (15-12-9-6-3)
	윤리의식	공사내외 생활의 건전성	5-4-3-2-1 (15-12-9-6-3)
종합의견 기술			
평가사유	해당 평정자만 기재 ※②에 해당		

※ ① 6급 상당 이하의 별정직원은 평정척도를 ()안의 수치로 하고, 항목별 배점을 업무능력(30), 업무기여도(30), 업무자세(40)으로 한다.

② 평가결과 90점 이상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사유 기재

평정자 : (인)

[별표 6] <개정 2015.11.4>

종합근무평정 감점평정기준 (제23조제3항 관련)

구 분	자격내용	감점	적용기간
•징계감점	•강등	△4	6년
	•정직	△3	5년
	•감봉(금품수수와 관련인 경우에 한함)		
	•견책(금품수수와 관련인 경우에 한함)	△1	"
	•감봉		
	•견책	△0.5	"

※ 감점은 4점을 최대로 하되, 점수가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6조제3항 관련)

별정직원 전환 신청서

사진첨부	○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직급/직위	
	○ 입 사 일		○ 퇴직예정일	
		자		

1. 별정직원 전환사유

2. 희망 담당직무

3. 희망전환일자

상기 본인은 「별정직원 관리 시행세칙」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정직원 전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10조 관련)

별정직원 근로계약서

사용자 및 근로자는 공사의 별정직원 관리 시행세칙 등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아래와 같이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1. 당사자

사용자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근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2. 임용기간 : 개월 (. . .부터 . . .까지)
 ※ 수습기간 (. . .부터 . . .까지)

3. 담당업무의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4. 복무 :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침·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근로시간 동안 주어진 직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하여야 한다.

5. 손해배상 :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근로자는 공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6. 근로조건

가. 근무 및 휴식시간

- 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② 휴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위 근무시간은 계절의 변화, 업무내용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 분	시업시각	종업시각	휴식시간	1일 근무시간	비 고

다. 휴일 · 휴가

휴일 및 휴가에 대해서는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7. 적용

별정직원은 본 계약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 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을 준용한다.

8. 확인

사용자 및 근로자는 별정직원 관리 시행세칙의 제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다.

첨부 : 서약서 1부.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사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인)

근로자 : (인)

서 약 서

본인은 귀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함에 있어서

○ 공사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하며, 공사 및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재직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결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 공사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직위를 이용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맡은 직무에 전념하겠으며, 공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정치활동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수습사원으로 발령을 받음에 있어서

○ 실무수습 종합성적이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수습기간 중 그 자질이 공사직 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 신체검사, 전력조회, 신원조회 등의 결과가 공사 제반규칙에 위배되거나, 제출한 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채용발령을 임의시정 또는 직권면직시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퇴직시 퇴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재직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귀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본인의 퇴직금에서 해당손해액을 충당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을 포함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기에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제13조제2항 관련)

별정직원 재임용 사유서

사진첨부	○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직급/직위	
	○ 입 사 일		○ 근속기간	

○ 운영실적	
· 담당업무(수행실적 등 기재)	
○ 운영계획	
· 향후 운영계획 기재	
· 재임용사유 기재	
○ 운영부서장 의견	
· 처우개선 요구 등 기타 의견 기재	
○ 인사부서장 의견	

상기 별정직원의 재임용을 추천합니다.

200 년 월 일

부 서 장 :

(인)

[별지 제4호서식] (제17조 관련)

해 고 예 고 통 지 서

1. 소 속 :
2. 직 종 :
3. 성 명 :
4. 주민등록번호 :
5. 현 주 소 :
6. 연 락 처 :

금번 당 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귀하를 년 월 일부로 계속 임용할 수 없게
되었음을 예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재직시 공사
발전에 기여하신 귀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인)